

의안번호	제324호
의결연월일	2021. 5. 10.

-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-

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. 4. 28. 김봉현, 전용구, 홍원표 의원

나. 회 부 일 자 : 2021. 5. 3.

다. 상 정 일 자 : 2021. 5. 10.

제269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의원 : 김 봉 현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(안 제1조, 제2조)
-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-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조)

-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조, 제6조)
- 아동학대 예방 교육·홍보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7조, 제8조)
- 비용 보조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9조, 제10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 [전문위원 : 박 우 현]

-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충청남도과 천안 등 도내 3개 시·군(전국 101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)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·운영하고 있으며,
- 조례의 내용이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,
-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## 4. 질의·답변요지

- 생      략

## 5. 토 론 요 지

○ 없 음

## 6. 심 사 결 과

○ 원안가결

## 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